

[사 건 명] 행심 2017 - 76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특별교육 이수 등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◎◎중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 3일(1시간씩),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』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10. 30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특별교육 이수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## I. 사안의 개요

가. 2017. 09. 08. 5교시 청구인과 ○○○이 체육관에서 체육시간에 ■■■ 교복치마를 들어 올리고 평상시에도 종종 이러한 일이 있었다.

나. 2017. 1학기 중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체육복 윗도리 및 책상에 sex라고 네임펜으로 여러군데 써 놓았다.

다. 청구인은 2017. 08. 05. 과 2017. 추석연휴기간에 청구인이 ■■■ 허락 없이 ■■■의 사진을 남학생에게 보내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고,

남학생이 ■■■이 못생겨 싫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■■■에게 재전송 하였다.

라. 2017. 10. 30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 처분조치 하였다.

## 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.

가. 피청구인측은 본 사건의 제대로 된 조사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였고, 절차상 판단근거, 반론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에 대해 설명 받지 못한 채 피해학생 ■■■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단하였다.

나. 학폭위가 열리기 전 청구인, ●●●, ○○○, △△△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“니네들이 그러니깐 애들한테 욕을 먹는 거야.” 라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.

다. 2017. 여름방학 중 청구인과 친구들의 대화방에서 평소 친했던 ■■■에게 이성친구를 소개시켜주고자 공유했던 ■■■의 사진을 남학생에게 보냈고 못생겨서 싫다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■■■에게 보여주며 소개가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웃으며 지나쳤던 일이다.

라. 박주원, ●●●, △△△, ⊕⊕⊕, ■■■은 평소 친한 사이였으며 ■■  
■이 먼저 성감대나, 성적인 발언, 야한 선정적 동영상을 공유하였다.

마. ■■■이 본인의 치마를 들추고 장난하였다 하여 여자로 수치심을 느  
꼈다며 신고하였는데 이는 서로 같이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으며  
학폭위에서 자신은 위 4명의 친구들에게 치마를 들춘 적이 없다고 거  
짓증언을 하였다.

바. 피청구인측에게 잘못된 사안의 수정 및 재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이를  
거부하였다.

라.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반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 알  
려 ‘비밀누설금지’ 조항을 어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다.

## II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2017. 10. 18. 사안접수 후 사안조사를 위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에게  
각각 자필 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았고, 공정성을 위하여 동일학급  
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여 사실을 확인 한 바 있으며, 청구인 및 피  
해학생의 보호자와 동일 횟수로 상담하였다. 또한, 학폭위 개최안내를  
서면으로 송부하였다.

나. 청구인 상담 시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뒷받침 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(SNS상 ■■■의 평소 성적인 발언)는 이 사건의 학폭위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다.

다. 학폭위 종료 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심의 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안에 대한 수정과 재검토 의뢰는 학폭위 후에 제기된 것으로 서면으로 재심안내 및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된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의뢰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라.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요소별 각 위원의 점수 산정에 의하여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.

## 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

### 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### 2. 판단

가. 인정되는 기초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보충서면, 각 제출된 증거,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청구인과 ○○○, □□□은 ○○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로, 1학기 때부터 서로 성적인 대화, 농담, 사진,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도 하고, 교복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친 적도 있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.

그러던 중 청구인과 ○○○은 낙서놀이를 하면서 □□□ 몰래 □□□의 체육복 윗도리와 □□□의 책상에 싸인펜과 네임펜으로 ‘SEX’ 라는 단어를 여러군데 써 놓았고, □□□이 이를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낙서를 하였으며, 2017. 09. 08. 5교시 체육시간에는 남자 체육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데도 □□□의 교복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다.

청구인은 2017. 08. 05. 과 2017. 추석연휴기간에 청구인이 □□□의 허락 없이 □□□의 사진을 남학생에게 보내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고, 남학생이 □□□이 못생겨 싫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□□□에게 재전송하기도 하였다.

#### 나.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

피청구인은 2017. 10. 30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

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 처분조치를 하였는 바, 이러한 처분조치가 적정한지 살피기로 한다.

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■■■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단하였고, 피청구인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으며, 피청구인에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및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,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‘비밀누설금지’ 조항을 어기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,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 및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한편, 청구인은 ■■■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지만 청구인 뿐만 아니라 ■■■도 평소 서로 같이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하였으므로 ■■■이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며, 청구인이 ■■■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는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에는 ■■■이 교복치마가 아닌 체육복을 입고 있었으므로, ■■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, 피청구인이 제출한 2학년 4반 학생 대상 설문 결과와 ■■■의 진술서,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에 ■■■이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는데,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청구인의 주장처럼 ■■■이 평소 청구인, ○○○ 등과 어울리면서 서로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한 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2017. 9. 8. 5교시 체육시간의 경우 남자 체육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인데도 청구인과 ○○○이 ■■■의 교복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■■■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추행으로 판단된다.

그리고 청구인은 ■■■을 포함한 친구들이 서로의 체육복과 책상에 낙서놀이를 하면서 ■■■의 체육복과 책상에 ‘SEX’가 아닌 ‘SEXY’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, ‘SEXY’라는 단어 또한 성적인 단어임은 틀림없으며, 청구인은 성적인 단어를 체육복과 책상에 쓰는 등 낙서놀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, 청구인과 ○○○에게는 단순한 낙서놀이였을 지 모르지만 ■■■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, 그럼에도 청구인은 ■■■ 몰래 ○○○과 함께 계속 체육복과 책상에 성적인 단어를 써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낙서놀이였다고 보기 어렵고, ■■■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괴롭힘으로 판단된다.

또한 청구인은 2017. 여름방학 중 청구인과 친구들의 대화방에서 평소 친했던 ■■■에게 이성친구를 소개시켜주고자 공유했던 ■■■의 사진을 남학생에게 보냈고 못생겨서 싫다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■■■에게 보여주며 소개가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웃으며 지나쳤던 일이라고 주장하나, 청구인이 ■■■으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■■■의 사진을 남학생에게 보내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사실 및 남학생이 ■■■이 못생겨 싫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■■■에게 그대로 재전송한 행위를 단순히 웃으면서 지나칠 정도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, ■■■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.

한편, 청구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같은 반 친구로서 1학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■■■이 청구인의 행위로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 점, 청구인과 ■■■은 평소 서로 교복치마를 들추기도 하고, 성적인 대화나 동영상 등을 공유해 오기도 하였으며, ■■■이 먼저 성적인 동영상 등을 보내준 적도 있어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로 ■■■

■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, ■■■도 청구인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성적 이미지, 성관계 동영상을 먼저 보내주는 등 ■■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조치는 과중하다.

이에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5일(방과 후 1시간씩), 사회봉사 1회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의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『서면사과,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3일(방과 후 1시간씩),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특별교육 3시간』으로 변경한다.

## V. 결어

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